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40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7.

발 의 자 : 조계원 · 민병덕 · 안도걸
소병훈 · 김문수 · 이광희
이개호 · 임미애 · 최혁진
김남희 · 서미화 · 복기왕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실제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과정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데이터 관리, 전문인력 경력 인정 등 관리·운영에 관한 통일된 기준 없이 기관별·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, 위원회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·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5 신

설 등).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1항 중 “위하여 박물관”을 “위하여 제5조의5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물관”으로 한다.

제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5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)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이 종합적·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2.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
4.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및 인력 관리·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
5.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
6. 제33조에 따른 박물관·미술관 협력망 구성에 관한 사항

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

의회를 둘 수 있다.

④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3.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

4.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및 인력 관리·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

5.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

6. 제33조에 따른 박물관·미술관 협력망 구성에 관한 사항

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④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